경상남도교육청 행정직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 채권회수 실무요령

채권회수 실무와 소멸시효 대응

2026. 10. 29. | 강사 법무사 손희상

교육청이 돈을 받을 쪽(채권자)인 경우의 회수와 시효 관리

# 강의 목차

### Ⅰ 기초개념

- 채권의 주인은 경상남도
- 교육청 채권의 세 갈래
- 판례 포인트: 대부료·변상금
- 오늘 쓰는 용어

### Ⅱ 내용설명

- Ⅱ-1 시효기간·기산일·완성일
- Ⅱ-2 시효의 중단과 정지
- Ⅱ-3 시효 완성을 막는 방법
- Ⅱ-4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
- Ⅱ-5 체납처분의 시행 주체와 위탁
- Ⅱ-6 채권회수 실무 요령

### Ⅲ 질의응답

- 사전 질의사례 7건
- 현장 예상 문답
- 마무리: 핵심 3가지

I

# 기초개념

**이 파트에서 배울 것**

1. 채권의 주인(경상남도)과 당사자 표시 방법
2. 교육청 채권의 세 갈래와 회수 경로
3. 체납처분·강제징수·"예에 따른다"의 뜻

# 채권의 주인은 경상남도

**교육청은 법인이 아니고, 돈을 받을 권리의 주체는 경상남도입니다.**

- 당사자 표시: 채권자 경상남도
  교육및학예에 관한 법률상 대표자 교육감 권순기
- 교육감이 소송·등기에서 경상남도를 대표
- 교육감 = 교육·학예 사무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직원은 지방공무원·국가공무원 두 부류
- 결정문 채권자가 "교육감"이면 경정신청 검토

**상세 설명**

교육청·교육지원청은 독립한 법인이 아닙니다. 교육·학예 사무에 관한 소송과 재산 등기에서는 교육감이 경상남도를 대표합니다.

지방자치법을 준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보므로, 사용료·분담금 등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이 관장하고 징수권자가 됩니다.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경상남도로 하되 소관청 "교육감"을 덧붙입니다.

교육행정직은 지방공무원, 교원은 국가공무원이라 징계부가금 징수 절차가 달라집니다(Ⅱ-5).

행정소송은 처분청이 피고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채권자가 "교육감"으로 적히기도 합니다. 집행 전에 "경상남도"로 경정신청을 검토합니다.

근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8조 제2항, 제20조 제12호·제13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 제2항 단서, 제98조 /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24조 제1항

# 교육청 채권의 세 갈래

**회수 방법은 채권의 근거 법률이 정합니다. 소송부터 하지 말고 체납처분 채권인지 먼저 봅니다.**

| 구분 | 교육청 채권의 예 | 근거 | 회수 방법 |
|---|---|---|---|
| ① 체납처분이 가능한 채권 |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연체료<br>변상금(무단점유)<br>징계부가금(지방·국가공무원)<br>과태료(학원법 등) | 공유재산법 제97조 제2항<br>공유재산법 제97조 제3항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8조·제9조<br>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4항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4항<br>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 | 독촉 → 압류 → 공매·추심<br>(법원 집행권원 불필요,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불허) |
| ② 사법상 채권 | 감사지적 회수금(과오지급 부당이득)<br>계약상 손해배상, 소송비용 | 민법 제741조<br>민사소송법 제110조 | 반환요구 → 지급명령·소송 → 집행권원 → 민사집행 |

# 교육청 채권의 세 갈래 (계속)

**회수 방법은 채권의 근거 법률이 정합니다. 소송부터 하지 말고 체납처분 채권인지 먼저 봅니다.**

| 구분 | 교육청 채권의 예 | 근거 | 회수 방법 |
|---|---|---|---|
| ③ 집행권원으로 확정된 채권 |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비용액확정결정 | 민사집행법 제28조, 제56조 | 강제집행, 재산명시·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

**상세 설명**

변상금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가 아니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이 정한 자체 절차(독촉 50일 이내 → 압류 → 매각)로 징수합니다. 뼈대는 같지만 근거 조문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대부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국가공무원(교원 등) 징계부가금은 국세강제징수의 예를 따릅니다.

# 판례 포인트: 대부료·변상금

**대부료는 민사소송이 안 되고, 변상금은 행정처분이라 부당이득 청구와 별개입니다.**

- 대부료: 체납처분 가능 → 민사소송 원칙 불허
- 변상금 부과 = 행정처분, 징수권 = 공법상 권리
- 변상금과 별개로 부당이득반환 소송 가능
- 변상금 징수해도 부당이득 시효는 중단 안 됨
- 점유 권원 있는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당연무효
- 산정식: 면적 × 평정가격 × 기간 × 요율 × 120%

**상세 설명**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공유 일반재산 대부료·연체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할 수 있어, 민사소송으로 구하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습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29087 판결 인용).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변상금 부과는 행정처분이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별개입니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44932 판결: 변상금 징수권 행사로는 부당이득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10991 판결: 점유를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있는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당연무효. 산정식은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주의** 징계부가금의 체납처분 가부를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4항·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4항 조문이 명시적이어서 근거로 충분합니다.

# 오늘 쓰는 용어

**"체납처분"과 "강제징수"는 같은 절차이고, "예에 따른다"는 절차만 빌리는 것입니다.**

| 용어 | 뜻 |
|---|---|
| 집행권원 |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법이 인정한 문서(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 체납처분 = 강제징수 | 법원을 거치지 않고 행정청이 직접 재산을 압류·매각하는 절차. 국세징수법이 2020. 12. 29. 전부개정(2021. 1. 1. 시행)되며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바꾸었고, 지방세징수법은 "체납처분"을 그대로 씀.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은 "국세강제징수의 예", 공유재산법·지방공무원법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적혀 있을 뿐 같은 뜻 |
| "~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그 법률의 징수 절차(독촉 → 압류 → 매각 → 청산)를 빌려, 집행권원 없이 스스로 강제징수한다는 뜻. 조세의 지위(조세우선권)까지 주는 것은 아니어서 우선변제권 규정이 없는 대부료·변상금·징계부가금은 배당에서 일반채권으로 취급 |
| 소멸시효 / 기산점 / 완성일 |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제도 / 시효가 진행하기 시작하는 날 / 시효기간 마지막 날이 끝나는 때 |
| 중단 / 정지 | 지나간 기간을 없애고 처음부터 다시 세는 것 / 일정 기간 완성만 늦추는 것(처음부터 다시 세지 않음) |
| 최고 / 시효이익의 포기 | 재판 밖에서 이행을 요구하는 것(독촉장, 내용증명) — 6개월 안에 후속조치 필요 / 시효 완성 뒤 채무자가 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

# Ⅰ 한 장 요약

**채권을 받기 전에 이 여섯 가지부터 확인합니다.**

☐ 당사자 표시는 "경상남도
교육학예에관한법률상대표자 대표자 교육감 권순기"

☐ 대상자 신분(지방공무원 / 국가공무원) 확인

☐ 체납처분 채권인지, 사법상 채권인지 먼저 구분

☐ 대부료는 민사소송 대신 체납처분(독촉 → 압류)

☐ 변상금 부과 전에 점유 권원 확인(무효 위험)

☐ "예에 따른다" = 절차만 빌림, 우선변제권 없음

II

# 내용설명

**이 파트에서 배울 것**

1. 시효기간 계산과 중단·정지의 구분
2. 채권이 사라지는 경우와 체납처분의 징수 주체
3. 집행권원 확보 → 재산 찾기 → 집행 → 사후관리의 순서

# Ⅱ-1 시효기간

**교육청 금전채권은 원칙 5년, 판결 등으로 확정되면 10년입니다.**

| 채권 | 기간 | 근거 |
|---|---|---|
|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원칙)<br>대부료·사용료·변상금·징계부가금·부당이득 등 | 5년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공유재산법 제97조 제1항 |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 | 5년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br>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2920 판결 |
| 과태료 | 확정 후 5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 |
| 판결·확정된 지급명령·화해·조정 등으로 확정된 채권 | 10년 |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민사소송법 제474조<br>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
| 불법행위 손해배상 | 안 날부터 3년<br>한 날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 Ⅱ-1 기산점과 완성일 계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세어, 마지막 날 24시에 완성됩니다.**

- 몰랐다는 사정은 기산을 늦추지 않음
- 납부기한 있는 채권: 기한 다음 날부터
- 과오지급: 지급한 날부터(감사일 아님)
- 확정판결·중단 후: 그때부터 새로 진행
- 첫날은 빼고, 마지막 날이 끝나면 완성

### 완성일 계산 예시

| 예시 | 기산 | 기간 | 완성 |
|---|---|---|---|
| 지급명령 2016. 7. 1. 확정 (→ 사례 5) | 2016. 7. 2. | 10년 | 2026. 7. 1. 24:00 |
| 대부료 납부기한 2022. 3. 31. | 2022. 4. 1. | 5년 | 2027. 3. 31. 24:00 |
| 감사지적 회수금 2023. 5. 10. 과오지급 | 2023. 5. 11. | 5년 | 2028. 5. 10. 24:00 |

### 상세 설명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행사할 수 없는 때"란 기간 미도래·조건 불성취 같은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경우이고, 권리가 있는 줄 몰랐다는 사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2920 판결). 감사지적 회수금은 지급한 때 성립하고 바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감사로 늦게 알았더라도 기산점은 늦춰지지 않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3항 제2호에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57조, 제159조, 제166조 제1항, 제178조 제1항·제2항 /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3항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2920 판결

# Ⅱ-1 시효관리대장

**채무자별로 완성일을 적고, 완성 6개월 전에 알림이 오게 합니다.**

| 채무자 | 근거·성격 | 금액 | 기산일 | 기간 | 완성 예정일 | 중단 조치 이력 | 다음 조치 기한 |
|---|---|---|---|---|---|---|---|
| 홍○○ | 대부료(공유재산법 제97조, 공법) | 1,200,000 | 2022. 4. 1. | 5년 | 2027. 3. 31. | 2025. 3. 5. 독촉장 | 2026. 9. 30. 압류 |
| 김○○ (공동채무자) | 대부료(위 건 공동) | 1,200,000 | 2022. 4. 1. | 5년 | 2027. 3. 31. | 2026. 2. 10. 일부 납부(승인) → 재기산 | 2031. 2. 10. (6개월 전 알림) |
| 박○○ | 감사지적 회수금(민법 제741조, 사법) | 850,000 | 2023. 5. 11. | 5년 | 2028. 5. 10. | 2026. 4. 2. 내용증명(최고) | 2026. 10. 1. 지급명령 |

**상세 설명**

권장 항목: 채권번호 · 채무자(공동채무자 각각) · 근거 법률과 채권 성격(공법/사법) · 금액 · 기산일 · 시효기간 · 완성 예정일 · 중단 조치 이력(일자·종류·결과) · 다음 조치 기한. 공동채무자는 사람마다 중단 사유가 달라 완성일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행을 나눕니다(→ 사례 5). 최고(독촉장·내용증명)는 6개월 안에 후속조치 기한을 바로 적습니다.

# Ⅱ-2 시효 중단 사유와 효력

**중단은 "처음부터 다시". 각하·취하·취소되면 중단 효력이 처음으로 돌아가 사라집니다.**

| 중단 사유 | 효력 발생 |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 | 근거 |
|---|---|---|---|
| 재판상 청구<br>(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 | 소를 제기한 때 | 각하·기각·취하 →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 등을 하면 최초 청구 때 중단된 것으로 봄 | 민법 제170조, 민사소송법 제265조<br>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
| 최고<br>(독촉장, 내용증명, 재산명시결정 송달) | 도달한 때 |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효력 없음 | 민법 제174조<br>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
| 압류·가압류·가처분 | 신청한 때로 소급 | 취하하거나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 없음 | 민법 제175조<br>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br>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2338 판결<br>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0다63591 판결 |

# Ⅱ-2 시효 중단 사유와 효력 (계속)

**중단은 "처음부터 다시". 각하·취하·취소되면 중단 효력이 처음으로 돌아가 사라집니다.**

| 중단 사유 | 효력 발생 |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 | 근거 |
|---|---|---|---|
| 승인<br>(채무 인정, 일부 납부, 분할납부 확약서) |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 — (관념의 통지라 효과의사 불필요) | 민법 제177조<br>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
| 납입고지<br>(법령·조례에 따른 고지) | 고지한 때 | 고지에 따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도 중단 효력 유지 | 지방재정법 제84조<br>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9933 판결 |
| 회생·파산 절차 참가<br>(채권자목록 제출, 채권신고) | 제출·신고한 때 | 신고를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 | 채무자회생법 제32조 |

# Ⅱ-2 꼭 짚을 포인트

**빈 계좌 압류도 시효를 중단시키고, 독촉장 효력은 채권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 피압류채권이 없어도 압류 신청으로 중단
- 각하·취하되지 않도록 보정 철저
- 사법상 채권의 독촉장 = 최고(6개월 내 조치)
- 공법상 채권은 납입고지 자체로 중단
- 연대채무: 이행청구만 전원 효력, 승인은 본인만
- 부진정연대: 1인의 중단은 다른 채무자에 효력 없음

**상세 설명**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2338 판결: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없더라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고, 압류절차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과태료의 중단·정지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2항).

공동채무자(→ 사례 5): 연대채무에서 한 사람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나, 승인 등은 그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16조, 제423조). 부진정연대채무는 1인의 중단 사유나 시효이익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주의 【확인 필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하는 대부료·징계부가금의 독촉이 그 자체로 중단 사유인지는 명문·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독촉 후 6개월 안에 압류하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근거 민법 제174조, 제416조, 제423조 / 지방재정법 제84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2항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2338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 Ⅱ-2 시효의 정지 / 중단과 정지의 비교

**정지는 "잠시 미룸"입니다. 사망·회생 통지를 받으면 대장에 정지 기간을 적습니다.**

| 정지 사유 | 완성이 늦춰지는 기간 | 근거 |
|---|---|---|
| 시효 만료 전 6개월 안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 취임 때부터 6개월 | 민법 제179조 |
|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 사례 6) | 상속인 확정, 관리인 선임, 파산선고 때부터 6개월 | 민법 제181조 |
| 천재 기타 사변으로 중단할 수 없는 경우 | 사유가 끝난 때부터 1개월 | 민법 제182조 |
| 개인회생 중지명령·개시결정으로 체납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기간 | 그 기간 동안 시효 진행 안 함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2항, 제600조 제4항 |
| (지방세) 분할납부·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 등 | 그 기간 동안 진행 안 함 |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3항 |

**중단** 지나간 기간이 없어지고 처음부터 새로 진행
대표 사유: 소 제기·지급명령, 압류·가압류, 승인
교육청 실무: 완성 6개월 전까지 조치

**정지** 완성만 일정 기간 늦춰짐
대표 사유: 상속인 미확정, 천재지변, 회생 중지 기간
교육청 실무: 사망·회생 통지 받으면 대장에 정지 기간 기록

# Ⅱ-3 상황별 시효 완성 방지 수단

**재산이 있으면 압류, 연락이 되면 승인, 둘 다 안 되면 재판상 청구입니다.**

| 상황 | 방법 | 유의점 | 근거 |
|---|---|---|---|
| 채무자 재산을 안다 | 압류·가압류 | 신청 시 중단. 각하·취하되지 않게 보정 |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5조 |
| 채무자와 연락이 된다 | 승인 받기: 분할납부 확약서, 채무확인서, 일부 납부 | 반드시 완성 전에. 완성 후 승인(일부 납부)은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되지 않음 | 민법 제177조, 제184조<br>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
| 사법상 채권, 집행권원 없음 | 지급명령 또는 소 제기 |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불가 |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
| 확정판결 등 10년 완성 임박 |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이행소송) 또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 확인소송 소가는 전소 권리가액의 1/10(3억 원 초과 시 3억 원)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br>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br>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3 |

# Ⅱ-3 상황별 시효 완성 방지 수단 (계속)

**재산이 있으면 압류, 연락이 되면 승인, 둘 다 안 되면 재판상 청구입니다.**

| 상황 | 방법 | 유의점 | 근거 |
|---|---|---|---|
| 최고(독촉·내용증명) 만 한 상태 | 6개월 안에 위 조치 | 최고 반복으로는 연장되지 않음 | 민법 제174조 |
| 체납처분 가능 채권 | 납입고지, 압류 |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불허 | 지방재정법 제84조<br>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

# Ⅱ-3 지급명령 송달불능과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보다 소송이 안전합니다. 공시송달은 소송에서만 됩니다.**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을 때 (→ 사례 4)**

- 주소보정명령 → 주소 보정 또는 소제기 신청
- 소제기신청 시 지급명령 신청일에 소 제기 간주
- 소송에서는 공시송달 가능(사유 소명)
- 인지는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만 보정
- 이미 각하됐다면 각하일부터 6개월 내 소제기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 사례 4)**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전소와 같은 이행소송 외에,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만 확인을 구하는 소를 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원인은 전소 판결의 확정과 후소 제기 사실뿐이고, 청구이의 사유는 심리하지 않습니다. 판결 확정 시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소제기 시기에 "10년 임박" 제한은 없으나 불필요한 반복은 소권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확정판결 사안이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소송비용액확정결정 채권에 쓸 때는 관할 법원 실무를 확인합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제2항, 제466조 제1항, 제472조 제1항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제3항 / 민법 제170조 제2항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 Ⅱ-4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

**법원 통지(채권자목록·채권신고 안내)를 받으면 기한 안에 신고·이의합니다.**

| 사유 | 효과 | 남는 채권 · 교육청 대응 | 근거 |
|---|---|---|---|
| 소멸시효 완성 | 채권 소멸 | 완성 후 받은 일부 납부·확인서는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되지 않음 → 포기 의사가 따로 인정돼야 함. 회계 규정에 따라 정리 | 민법 제184조<br>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
| 파산 면책 | 배당 외 파산채권 책임 면제 | 비면책: 조세, 벌금·과료·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등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
| 개인회생 면책 |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 외 면제 | 비면책: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없는 청구권, 벌금·과태료 등. 보증인·담보에는 영향 없음 |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제3항 |
|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강제집행·가압류·체납처분 중지·금지 | 그 기간 시효 진행 안 함. 압류분은 지급을 멈추고 법원 결정 확인 |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제4항 |
| 회생계획 인가 | 계획·법률로 인정된 권리 외 회생채권 면책 | 채권신고 누락 주의 |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

# Ⅱ-4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 (계속)

**법원 통지(채권자목록·채권신고 안내)를 받으면 기한 안에 신고·이의합니다.**

| 사유 | 효과 | 남는 채권 · 교육청 대응 | 근거 |
|---|---|---|---|
| 법인 청산종결 | 원칙적으로 법인격 소멸 |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어도 채무가 남으면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 → 청산인을 상대로 청구 | 민법 제81조<br>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br>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

**상세 설명**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에 참가(채권자목록 제출, 채권신고)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2조). 징계부가금·대부료·변상금은 비면책채권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채권자목록에 교육청 채권이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하고 빠졌으면 이의·신고 절차를 밟습니다.

# Ⅱ-5 채권별 징수 방식과 주체

**모두 교육감이 민사판결 없이 직접 압류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위탁은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만 됩니다.**

| 채권 | 징수 방식 | 징수 주체 · 위탁 | 근거 |
|---|---|---|---|
| 징계부가금<br>(교원 등 국가공무원) | 국세강제징수의 예<br>(국세징수법 준용) | 교육감 직접.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 의뢰 후 5년 경과 징수 불가 → 징계위원회 감면의결 요청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4항·제5항 |
| 징계부가금<br>(교육행정직 등 지방공무원)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br>(지방세징수법 준용) | 교육감 직접(위탁 규정 없음). 성실히 징수해도 5년 경과 징수 불가 → 인사위원회 감면의결 요청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4항·제5항,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의2 |
|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연체료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 교육감(교육·학예 사무) 직접 | 공유재산법 제22조, 제32조, 제80조, 제97조 제2항, 제98조 |
| 변상금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자체 절차(독촉 → 압류 → 매각) | 교육감. 주소·재산이 다른 지자체에 있으면 그곳 징수공무원에게 징수촉탁 가능 | 공유재산법 제81조, 제97조 제3항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8조, 제9조, 제7조의4 |
| 과태료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 행정청. 이의제기로 재판이 확정되면 검사가 집행, 최초 부과 행정청에 집행 위탁 가능(→ 사례 1)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 제42조, 제43조 |

# Ⅱ-5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와 "국세강제징수의 예" 비교

**뼈대는 같고, 실무 차이는 독촉장 발급 기한(50일 vs 10일)과 세무서 위탁 가능 여부입니다.**

| 구분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 국세강제징수의 예 |
|---|---|---|
| 준용 법률 | 지방세징수법 | 국세징수법 |
| 교육청 적용 채권 | 대부료·연체료(공유재산법 제97조 제2항),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4항)<br>※ 변상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자체 절차(구조 동일) | 교원 등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4항) |
| 집행 주체 | 교육감이 징수공무원을 통해 직접 | 교육감 직접 준용. 징수 곤란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 |
| 독촉장 발급 기한 / 납부기한 |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50일 이내 발급(지방세징수법 제32조 제1항),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20일 이내(제3항). 변상금도 50일(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8조) |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 발급(국세징수법 제10조 제1항), 납부기한은 독촉일부터 20일 이내(제2항) |
| 압류 요건 | 독촉장을 받고 지정기한까지 미납(제33조 제1항 제1호). 변상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9조 제1항 | 독촉을 받고 독촉장 기한까지 미납(제31조 제1항 제1호) |
| 우선변제권 | 없음. 절차만 빌리므로 배당에서는 일반채권 | 없음(같음) |

# Ⅱ-5 체납처분 절차 흐름

**압류 전에 독촉이 반드시 먼저입니다. 급여는 압류 제한, 배분은 일반채권입니다.**

① 납부고지 → ② 독촉 → ③ 재산조사 → ④ 압류 → ⑤ 채권압류 통지 → ⑥ 매각 → ⑦ 배분·정리

| 단계 | 내용 | 근거 |
|---|---|---|
| ① 납부고지 | 징계부가금: 사유설명서와 함께 납부고지서 교부, 60일 안에 미납하면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의2 |
| ② 독촉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안에 독촉장 발급, 독촉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20일 이내. 압류 전 독촉이 반드시 선행 | 지방세징수법 제32조 (변상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8조) |
| ③ 재산조사 | 체납자·거래 상대방·채무자 등에 질문, 장부·서류 검사·제출 요구 | 지방세징수법 제36조 (변상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11조, 제5조) |
| ④ 압류 | 독촉장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급여채권 압류 제한(제42조), 압류금지 재산(제40조) 확인 |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변상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9조) |

# Ⅱ-5 체납처분 절차 흐름(계속)

**압류 전에 독촉이 반드시 먼저입니다. 급여는 압류 제한, 배분은 일반채권입니다.**

① 납부고지 → ② 독촉 → ③ 재산조사 → ④ 압류 → ⑤ 채권압류 통지 → ⑥ 매각 → ⑦ 배분·정리

| 단계 | 내용 | 근거 |
|---|---|---|
| ⑤ 채권압류 | 제3채무자에게 압류 통지 → 송달된 때 효력, 체납액 한도에서 대위 추심. 체납자에게도 통지 | 지방세징수법 제51조, 제52조 |
| ⑥ 매각 | 공매 또는 수의계약. 한국자산관리공사·지방세조합에 공매 등 대행 가능 | 지방세징수법 제71조, 제72조, 제103조의3 |
| ⑦ 배분·정리 | 배분 후 잔여 체납액은 시효 관리, 징수 불능 시 감면·정리. 조세우선권이 없어 배분에서는 일반채권 | 지방세징수법 제97조 이하 |

# Ⅱ-5 위탁할 수 있는 곳

**세무서 위탁은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 대행만 됩니다.**

| 위탁 상대 | 가능 여부 | 근거 |
|---|---|---|
| 세무서장 | 교원 등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만 가능(징수가 사실상 곤란할 때).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대부료·변상금은 근거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4항 후단 |
| 한국자산관리공사 | 체납처분 전부 위탁 ×<br>압류재산의 공매·수의계약·권리이전·금전 배분 대행 ○ |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 제1항 |
| 다른 지방자치단체 징수공무원 | 변상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촉탁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4 |
|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 | 집행권원 있는 사법상 채권은 추심 위탁 가능<br>체납처분 채권은 "다른 법률에서 위탁을 허용한 채권"이어야 하나, 지방공무원법·공유재산법·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그런 규정 없음 | 신용정보법 제2조 제10호·제10호의2·제11호<br>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4항 |

# Ⅱ-6 감사지적 회수금: 집행권원 얻기

**과오지급은 부당이득입니다. 지급한 날부터 5년, 반환요구 후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을 냅니다.**

- 성격: 부당이득반환청구권(사법상 채권)
- 악의의 수익자는 이자를 붙여 반환
- 개별 법령에 환수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 우선
- 시효 5년, 기산은 지급 시(감사 시점 아님)
- 순서: 반환요구 → 6개월 내 지급명령·소 → 집행
- 지연손해금: 청구 시부터 연 5%,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 이율

**상세 설명**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깁니다(민법 제387조 제2항). 법정이율은 연 5%(민법 제379조)이고,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을 적용합니다.

반환 요구(내용증명)는 최고에 그치므로 6개월 안에 지급명령 또는 소를 제기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근거 민법 제741조, 제748조 제2항, 제387조 제2항, 제379조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2920 판결

# Ⅱ-6 지급명령과 소송의 비교

**주소가 확실하면 지급명령, 주소를 모르거나 다툼이 크면 소송입니다.**

| 비교 | 지급명령 | 소송(이행의 소) |
|---|---|---|
| 인지 |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 소장 인지액 |
| 송달 | 공시송달 불가(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 공시송달 가능(민사소송법 제194조) |
| 채무자 불복 |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 → 소송으로 이행(제470조, 제472조 제2항) | 답변서·변론 |
| 확정 효력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집행(제474조,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 확정판결 + 집행문 |
| 관할 | 채무자 보통재판적 또는 의무이행지 등 법원의 전속관할(제463조 제1항, 제8조). 금전채무는 채권자 주소지 변제가 원칙(민법 제467조 제2항) | 같은 원칙 |
| 권하는 경우 | 채무자 주소가 확실하고 다툼이 적을 때 | 주소 불명, 다툼이 클 때 |

# Ⅱ-6 집행권원별 강제집행 준비 서류

**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집행하고, 판결·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 집행권원 | 집행문 | 함께 필요한 것 | 근거 |
|---|---|---|---|
| 확정판결 | 필요 | 송달증명, 확정증명 | 민사집행법 제28조 |
| 확정된 지급명령 | 불필요(승계인을 위하거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이면 필요) | 확정 표시된 정본 |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소액) | 불필요(승계 시 필요) | 이행권고결정서 정본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 필요 | 송달증명(확정 여부 확인)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 |
| 공정증서(집행증서) | 필요(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부여) | 송달증명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제59조 제1항 |

# Ⅱ-6 대부료·변상금: 체납처분으로 부족할 때

**대부료는 교부청구·참가압류로, 변상금은 부당이득 소송을 병행해서 받습니다.**

- 기본: 고지 → 독촉 → 조사 → 압류 → 공매·추심
- 대부료: 지급명령을 새로 내지 말 것(각하 위험)
- 다른 집행절차에 교부청구·참가압류로 배분
- 변상금: 부당이득 소송 병행 → 재산명시·조회 가능
- 변상금 징수로 부당이득 시효는 중단 안 됨
- 무단점유가 계속되면 토지인도 검토

**상세 설명**

대부료 민사소송 불허: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29087 판결. 교부청구·참가압류: 지방세징수법 제66조, 제67조.

변상금과 부당이득 병행: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44932 판결. 산정식: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점유 권원이 있는 자에 대한 부과는 당연무효(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10991 판결) → 부과 전 권원 확인이 회수의 출발점. 공유재산 원상복구·시설물 철거는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면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2013다207941 판결 판시사항 [2]).

# Ⅱ-6 변상금(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추가 수단

**변상금은 신용정보 제공·관허사업 제한·명단공개·사해행위취소까지 쓸 수 있습니다.**

| 수단 | 요건 · 내용 | 근거 |
|---|---|---|
| 체납 자료 제공 | 체납일부터 1년 지난 체납액 500만 원 이상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6조 |
| 관허사업 제한 | 같은 종류 사업의 허가 등 제한. 3회 이상 체납하고 세 번째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 총 체납액 30만 원 이상이면 사업 정지·허가 취소(요구) | 같은 법 제7조의2 |
| 명단공개 | 체납일부터 1년 지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소명 기회 | 같은 법 제7조의3 |
| 징수촉탁 | 주소·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 | 같은 법 제7조의4 |
| 사해행위 취소 | 징수를 피하려는 재산 처분행위의 취소·원상회복 청구 | 같은 법 제18조 |

# Ⅱ-6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집행권원 채권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 채권은 질문·검사권으로 재산을 조사합니다.**

| 구분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
| 신청인 | 금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집행선고부 판결 등 제외) |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 |
| 요건 | 정당한 이유. 채무자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면 기각 | ① 명시절차에서 주소보정 불능 ② 재산목록만으로 만족 부족 ③ 불출석·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거짓 목록 |
| 관할·송달 | 채무자 보통재판적 법원. 공시송달·발송송달 불가 → 송달 안 되면 주소보정, 불이행 시 각하 |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 |
| 진행 | 이의 1주 → 명시기일에 재산목록 제출·선서(1년 내 부동산 유상양도, 2년 내 무상처분 포함) | 조회 기관·단체 특정, 비용 예납 → 법원이 기관에 일괄 조회 |
| 제재 | 불출석 등 20일 이내 감치, 거짓 목록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조회 결과를 강제집행 외 목적으로 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시효 유의점 · 조회 대상 기관 · 근거**

시효: 재산명시결정 송달은 "최고" 효력뿐이므로 6개월 안에 압류·소 제기 등을 따로 합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조회 대상(민사집행규칙 별표): 법원행정처(토지·건물, 과거 2년 보유내역), 국토교통부, 특허청, 은행·금융투자·저축은행·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계좌별 50만 원 이상), 보험회사(해약환급금 50만 원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재산명시 인지 1,000원. 근거: 민사집행법 제61조~제64조, 제68조, 제74조~제77조 / 민사집행규칙 제25조, 제35조~제37조 / 지방세징수법 제36조

# Ⅱ-6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 미이행이면 등재를 신청합니다. 등재 자체는 시효중단 사유가 아닙니다.**

- 요건: 확정 후 6개월 미이행 또는 명시기일 불출석 등
- 관할: 채무자 주소지 법원 / 재산명시 법원
-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으면 기각
- 효과: 법원 비치, 시·구·읍·면 송부, 신용정보 활용
- 말소: 변제 증명 시 신청, 등재 다음 해부터 10년 지나면 직권
- 비용: 인지 1,000원

**상세 설명**

실무 의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대출·신용회복을 하려 할 때 연락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재 자체는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므로 시효 관리는 따로 합니다.

6개월 기산점: 판결·지급명령은 확정일, 공정증서는 작성일입니다. 확정증명원으로 날짜를 확인합니다. 명시기일 불출석 등(제70조 제1항 제2호)을 사유로 하면 재산명시를 실시한 법원에 냅니다.

누구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인쇄물 공표는 금지됩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70조~제73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3호

# Ⅱ-6 재산 종류별 집행 요령

**법인 채무는 대표자 재산에, 자녀 채무는 부모 재산에 집행할 수 없습니다.**

| 재산 | 집행권원 없을 때 | 집행권원 있을 때 | 확인할 점 |
|---|---|---|---|
| 부동산 | 부동산가압류 | 강제경매 |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배당 가능성 낮음 → 등기부로 먼저 확인 |
| 자동차 | 자동차가압류 | 강제경매 | 차량 확보(인도) 필요, 등록원부로 선순위 확인 |
| 예금·급여·대여금·공사대금 | 채권가압류 | 압류·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 압류금지 범위(민사집행법 제246조) 확인 |
| 유체동산 | 유체동산가압류 | 집행관 압류·매각 | 경제적 가치, 채권자 입회 |
| 주식 | 주식가압류 | 압류 후 현금화 | 비상장주식은 회사, 전자등록주식은 계좌관리기관(증권회사)이 제3채무자 |

**책임 주체 확인**

책임 주체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법인 채무는 대표자가 보증하지 않았으면 대표자 재산에 집행할 수 없습니다(대표자 개인 채무라면 그가 가진 법인 주식은 압류 가능). 미성년 자녀의 채무로 부모 재산에 집행할 수 없고, 배우자는 일상가사 채무만 연대책임을 집니다(민법 제832조).

# Ⅱ-6 서식 6~8 작성 포인트

**세 서식 모두 채권자 표시는 "경상남도 / 위 대표자 교육감 ○○○ (소관: ○○교육지원청)"입니다.**

### [서식 6] 재산명시신청서

- 기재사항: 채권자·채무자, 집행권원, 불이행 금액, 신청취지·사유(민사집행규칙 제25조)
- 인지 1,000원
- 채권자가 한 재산조사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쉽게 찾을 수 있으면 기각)
- 공시송달 불가 → 주소보정명령 기한 내 보정
- 시효 임박 시 6개월 안에 압류·소제기 별도

### [서식 7] 재산조회신청서

- 재산명시 사건번호 그대로 기재
-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사유(1~3호) 선택·소명
- 조회할 기관·단체 특정, 비용 예납(제74조 제2항)
- 과거 2년 보유내역은 법원행정처만 가능
- 결과를 강제집행 외 목적에 쓰면 처벌(제76조)

### [서식 8]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서

- 집행권원 확정일 기재, 확정증명 첨부
- 확정 후 6개월 경과 소명(제70조 제1항 제1호)
- 재산 미발견 사정 기재(쉽게 집행 가능하면 기각)
- 인지 1,000원
- 명시기일 불출석 사유면 재산명시 법원에 제출

# Ⅱ 한 장 요약

**시효는 대장으로, 회수는 채권 성격에 맞는 절차로 관리합니다.**

- ☐ 원칙 5년, 확정되면 10년 — 짧은 쪽 기준으로 관리
- ☐ 기산은 "행사할 수 있는 날" 다음 날, 감사일이 아님
- ☐ 중단은 처음부터, 정지는 잠시 미룸
- ☐ 최고(독촉장·내용증명)는 6개월 안에 압류·소 제기
- ☐ 압류가 각하·취하되면 중단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

- ☐ 주소 불명 → 지급명령 대신 소송(공시송달)
- ☐ 회생·파산 통지 → 채권자목록 확인·신고
- ☐ 체납처분은 독촉 먼저, 세무서 위탁은 국가공무원 부가금만
- ☐ 재산명시·조회·명부등재는 집행권원 채권자만
- ☐ 배당에서 체납처분 채권은 일반채권

Ⅲ

# 사전 질의사례 7건

1. 결론 → 이유 → 교육청 조치 순으로 답합니다
2. 사실관계는 질의서 기재를 전제로 합니다
3. 개별 사건은 원본 서류(결정문·송달증명·납부 내역)로 다시 판단합니다

# 사례 1 과태료 이의제기와 징수결의

**질의** 학원법상 과태료 부과에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는지, 기존 징수결의를 취소(감액)하고 재판 확정 후 새로 징수결의하는 것이 타당한지, 징계부가금도 이의제기로 효력을 잃는지

**결론** **① 타당합니다. 이의제기로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으므로 징수결의를 취소하고, 재판 확정 후 집행을 위탁받으면 새로 징수결의합니다. ② 학원법 과태료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됩니다. ③ 징계부가금은 이의제기로 효력을 잃는 제도가 없습니다(소청·소송에도 효력 유지).**

**이유**

- 학원법 제23조 제2항만 남고 제3~5항은 2011년 삭제
- 부과 통지 후 60일 내 서면 이의 → 부과처분 효력 상실
- 행정청은 14일 내 의견·증빙을 붙여 법원에 통보
- 재판 확정 후 검사가 집행, 최초 부과 행정청에 위탁 가능
- 과태료 시효: 부과처분·재판 확정 후 5년
- 징계부가금: 집행부정지 원칙,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시만 정지

**교육청 조치**

징수결의 취소 사유란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부과처분 효력 상실"을 적습니다.

이의제기 접수일, 법원 통보일, 검사 위탁 통지 수령일을 대장에 기록합니다.

징계부가금은 납부고지서 수령 후 60일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지방공무원) 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국가공무원)로 징수하고, 소청·판결로 취소·감액되면 환급합니다.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15조 제1항, 제20조 제1항·제2항, 제21조 제1항·제3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 학원법 제23조 제2항 /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제69조의2 제4항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4항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제2항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의2

# 사례 2 폐교 대부료 지급명령과 토지인도 판결

**질의** 대부료 부과(2014. 8. 14.) → 지급명령 확정 → 토지인도 판결(2017. 9. 21.) → 확정(2017. 10. 28.). 대부료 시효 완성 시기와 토지인도 소송의 영향 ※ 질의서의 확정일 "2025. 11. 4."는 "2015. 11. 4."의 오기로 전제

**결론** **토지인도 판결은 대부료 채권의 시효에 영향이 없습니다.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대부료 채권은 10년 시효로, 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2025. 11. 4. 24:00에 완성되었습니다(강의일 현재 완성).**

**이유**

- 확정 지급명령 = 확정판결 효력, 시효 10년 → 2015. 11. 5.부터 세어 2025. 11. 4. 만료
- 토지인도 소송물은 인도청구권, 대부료 행사로 보기 어려움
- 소장에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가 함께 있었는지 확인
- 계약 종료 후 사용 대가는 변상금·부당이득(별개 채권, 5년)
- 대부료는 민사소송 불허가 원칙이나, 확정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으로 사용 가능
- 완성 후 일부 납부도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되지 않음

**교육청 조치**

2015. 11. 5.부터 2025. 11. 4.까지 압류·승인 등 중단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시효완성 채권으로 정리합니다.

앞으로 대부료는 납부고지·독촉·압류(체납처분)로 관리합니다.

계약 종료 후 점유 기간은 변상금으로 부과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절차로 독촉·압류합니다.

근거 민법 제157조, 제165조 제2항, 제178조 제2항, 제184조 / 민사소송법 제474조 / 공유재산법 제81조, 제97조 제2항·제3항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 사례 3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송달불능 각하와 시효

**질의** 소송비용액 확정(2015. 6. 11.) →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2024. 12. 11.) → 송달불능으로 각하(2025. 2. 19.). 시효 완성 여부

**결론** **시효는 이미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년이면 2025. 6. 11.에 완성되고, 그 전의 2024. 12. 11. 신청은 적법하나 각하되면 압류로 생긴 중단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유**

- 원칙 5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10년 적용 가능
- 압류에 의한 중단은 신청한 때로 소급
-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되면 중단 효력 소급 상실
- 부적법 각하·취소는 민법 제175조 취소로 볼 여지(2009다20 판결 이유)
- 송달불능 각하 판례는 미확인 → 같은 방향으로 보는 것이 안전
- 각하 후 2025. 6. 11. 전 다른 압류·소 제기·승인이 없으면 완성

**교육청 조치**

압류 신청 후 송달불능 보정명령을 받으면 주민등록 초본 재발급·현장 확인으로 주소를 보정하고, 공시송달 신청도 검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준용, 관할 법원 실무 확인).

압류 각하·취하에는 재판상 청구(민법 제170조 제2항)와 달리 6개월 유예 규정이 없으므로 원래 완성일로 다시 계산합니다.

질의서의 "확정(2015. 6. 11.)"이 결정일이면 확정일을 확인해 다시 계산합니다.

근거 민법 제165조 제2항, 제168조 제2호, 제175조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2338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0다6359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20 판결

# 사례 4 지급명령 송달불능과 시효 예방

**질의** 소송비용액 확정(2016. 6. 30.) → 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 지급명령 신청(2026. 6. 2.) → 3회 보정에도 송달불능. 시효 완성 여부와 다른 예방 방법

**결론** **10년으로 보면 2026. 6. 2. 지급명령 신청으로 시효는 일단 중단되었습니다. 지금 할 일은 소제기신청으로 소송절차로 넘겨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각하되었다면 각하일부터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야 신청일의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유**

- 2026. 6. 30. 완성 예정 → 그 전인 6. 2. 신청은 재판상 청구
- 5년 전제라면 2021. 6. 30. 이미 완성 【확인 필요】(사례 3과 같은 쟁점)
-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불가, 소제기신청 시 신청일에 소 제기 간주
- 집행권원이 있어도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이익 인정
-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선택 가능
- 재산명시결정 송달은 최고 효력뿐, 재산명시도 공시송달 불가

**교육청 조치**

주소보정 기한 안에 [서식 1] 소제기신청서와 공시송달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앞으로 주소가 불확실한 채무자에게는 처음부터 소장([서식 2] 확인의 소 또는 이행의 소)을 냅니다.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신청 시 중단), 연락이 되면 승인을 받습니다.

근거 민법 제170조, 제174조 /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462조 단서, 제466조 제1항, 제472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62조 제5항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 사례 5 공동 대부 채무의 일부 납부

**질의** A·B 공동 대부 → 대부료 지급명령 확정(2016. 7. 1.) → A가 절반 납부(2026. 5. 1.). 시효 완성 여부와 남은 채무를 누가 갚아야 하는지 ※ 질의서의 "채권자 A"는 "채무자 B"로 봄

**결론** **B의 채무는 2026. 7. 1. 24:00에 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A는 2026. 5. 1. 일부 납부(승인)로 중단되어 다음 날부터 새로 10년이 진행합니다. 남은 금액을 A에게 받을 수 있는지는 연대채무인지 부진정연대채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유

- 확정 지급명령 10년, 2016. 7. 2.부터 세어 2026. 7. 1. 만료
- 일부 납부 = 승인, 연대채무에서 승인은 그 채무자에게만 효력
- 연대채무: B 시효 완성 → B 부담부분(균등 추정) 한도에서 A도 면책 → A가 이미 자기 부담부분을 냈다면 남은 절반 청구 어려울 수 있음
- 부진정연대채무: 절대적 효력 규정 없음 → A에게 청구 여지, A의 시효는 2036. 5. 1. 완성
- 지급명령 주문이 "연대하여"인지 "공동하여"인지와 대부계약서 확인

## 교육청 조치

공동채무자는 사람마다 시효를 따로 관리합니다. 한 사람이 냈다고 다른 사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B의 시효 완성 전에 B에게도 압류·승인·재판상 청구 등 조치를 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대부계약에서 부담부분을 달리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근거 민법 제157조, 제165조 제2항, 제416조, 제421조, 제423조, 제424조, 제616조, 제654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 사례 6  채무자 사망 시 채권 회수

**질의**  채무자 사망 후 회수 방법, 상속한정승인이 있을 때 회수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법, 사망 전에 채권을 미리 확보하는 방법

**결론**  **상속인 확인 → 승계집행문 → 상속인 재산(한정승인이면 상속재산 한도)에 집행합니다. 한정승인 여부는 상속 개시지(피상속인 주소지) 가정법원에서 확인합니다. 생전 대비는 담보·연대보증·공정증서·조기 집행권원 확보와 (가)압류입니다.**

### 이유

- 지방자치단체는 직무상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능
- 상속인은 안 날부터 3개월 내 승인·포기, 특별한정승인 가능
-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는 상속인 확정 등부터 6개월 시효 정지
- 승계집행문: 증명서 첨부하여 제1심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확정 지급명령도 필요)
- 한정승인 시 신고기간(2개월 이상) 내 채권신고 → 배당변제
- 체납처분: 사망 후 체납자 명의 재산 압류는 상속인에 대한 것으로 봄

### 교육청 조치

사망 확인 즉시 시효관리대장에 "정지(민법 제181조)"를 기록하고 상속인 확정일을 추적합니다.

한정승인 심판 여부는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에 이해관계를 소명해 확인합니다(법원별 실무 확인).

고액 채무자는 생전에 연대보증·담보·공정증서를 받아 두고, 재산이 보이면 바로 (가)압류합니다.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민법 제181조, 제998조, 제1019조 제1항·제3항, 제1028조, 제1032조, 제1034조 / 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 제31조, 제56조 제4호, 제58조 제1항 제3호 /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 지방세징수법 제47조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15조의2 제1항

# 사례 7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의 자체 징수

**질의**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은 세무서 위탁이 가능하나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대부료 미납금은 자체 징수해야 하는데, 처분권자가 자체 징수하는 방법(지급명령 → 집행권원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강제집행인지)

**결론** **지급명령 → 재산명시 → 재산조회의 민사 경로가 아닙니다. 처분권자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직접 독촉·재산조사·압류·공매합니다. 세무서 위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교원 등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므로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르고 징수 곤란 시 세무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신분부터 확인합니다.**

## 이유

- 지방공무원법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만 정하고 위탁 규정 없음. 대부료도 같은 구조
- 두 "예"는 2021년 용어 차이일 뿐 같은 자력집행 절차
- 체납처분 채권을 민사소송으로 구하면 권리보호이익 부정 우려
- 재산명시·조회는 집행권원 채권자만 → 질문·검사권으로 재산 조사
- 절차: 고지(60일) → 독촉(50일 내, 기한 20일) → 조사 → 압류 → 공매 → 배분(일반채권)
- 5년 경과 징수불능 시 인사위원회 감면의결 요청

## 교육청 조치

징계부가금 대상자의 신분(지방공무원/국가공무원)을 처분서로 확인하고 근거 조문을 맞춰 적습니다.

독촉장 발급 기한(지방 50일·국가 10일)을 넘기지 않도록 대장에 납부기한 경과일을 기록합니다.

시효는 지방자치단체 금전채권으로 5년. 납입고지와 압류로 중단을 관리합니다.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4항·제5항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4항·제5항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의2 /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제33조, 제36조, 제42조, 제51조, 제52조, 제71조, 제103조의3 / 국세징수법 제10조, 제31조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84조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취지

# 현장 질의 대비 예상 문답

**Q. 독촉장을 매년 보내면 시효가 계속 연장되나요?**
A. 사법상 채권의 독촉장은 최고에 그쳐 6개월 안에 소 제기·압류가 없으면 효력이 없고, 반복해도 연장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74조). 공법상 채권은 법령·조례에 따른 납입 고지에 중단 효력이 있습니다(지방재정법 제84조).

**Q.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A. 채권자목록에 교육청 채권이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하고 다르면 이의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체납처분이 중지되고 그 기간 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목록에 없는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Q. 대부료를 체납처분으로 압류해 배당을 받을 때 세금처럼 우선변제를 받나요?**
A. 아닙니다.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것은 절차를 빌리는 것이지 조세의 우선권까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료·변상금·징계부가금에는 우선변제 규정이 없어 배당에서 일반채권으로 취급되므로, 선순위 담보가 많은 재산은 압류 실익이 작을 수 있습니다.

**Q. 시효가 지난 채권인데 채무자가 일부를 냈습니다. 나머지도 받을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로 "완성 후 승인 =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가 폐기되었습니다. 포기 의사가 따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잔액 청구는 어렵고, 받은 돈의 처리는 개별 검토합니다.

**Q. 압류할 재산이 전혀 없는 채무자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A. 확정 채권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고, 10년 완성이 다가오면 시효중단 재소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냅니다. 피압류채권이 없어도 압류 신청으로 집행채권 시효가 중단된다는 판례(2025다212338)도 있습니다.

**Q. "체납처분"과 "강제징수"는 다른 절차인가요?**
A. 같은 절차입니다. 2021. 1. 1. 시행된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으로 국세 쪽 용어만 "강제징수"로 바뀌었고, 지방세징수법은 "체납처분"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은 "국세강제징수의 예", 지방공무원법·공유재산법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라고 적혀 있을 뿐입니다.